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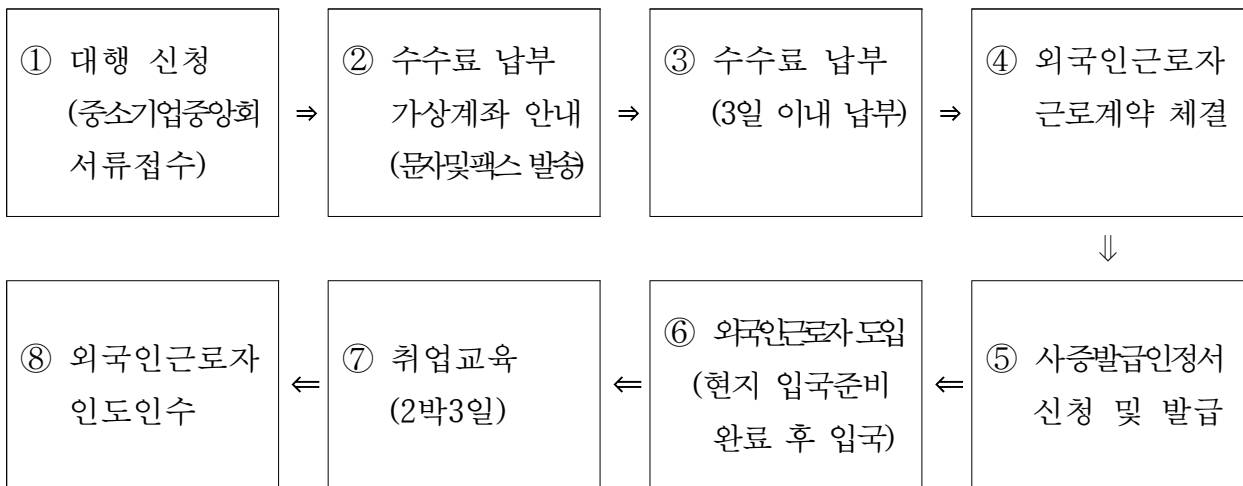
신규 및 지정알선근로자 업무대행 안내

□ 제출서류

- 업무대행계약서 (필수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필수)
- 위임장 (필수)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(2인 이상 대표자 각각 필수)

□ 세부내용

○ 진행 절차



- ※ ② : 대행신청 접수 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체로 가상계좌 안내문 발송(문자 및 팩스)
- ④ ~ ⑦ : 중소기업중앙회 및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
- ⑧ :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를 위해 취업교육 장소로 업체 담당자가 방문해야 함.
(입국일 전 주 금요일 인도인수 안내문 발송)

○ 필수경비 : 1인당 380,000원 (도입위탁 + 취업교육 + 업무대행)

※ 면세계산서 발행 : 입금 후 수일 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EPS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

□ 문의처 : 1666-5916 (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)

※ 외국인근로자 입국 관련 참고사항

외국인 근로자 입국 소요기간은 국내 행정 업무 완료 후, 해당 국가상황 및 개인사정에 따라 입국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입국일 예상(기간 특정 불가)이 어려우니, 업무 대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국 일정은 입국일 2주 전후로 결정되고 이 시기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업체로 안내됩니다.

붙임 1. 업무대행계약서 2. 위임장

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

사용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

사업장 명칭		사업주 성명	
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팩스번호		e-mail	
소재지			

* 귀사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.

대행기관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

명칭	중소기업중앙회	전화번호	1666-5916
대표자	김기문	팩스번호	0502-397-0273
소재지	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		

“갑”은 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“을”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,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대행수수료)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(1인당 ₩ 380,000)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.

제2조(대행업무 범위)

신규입국자

대행업무		대행 세부업무	신청여부 (√)	비고
신규, 재입국자 <필수>	근로자 도입위탁 (60,000원)	·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	√	<필수>
	취업교육 (234,000원)	·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		

대행 계약시	각종 신청대행 [상담, 안내] (86,000원)	입국 전 (43,000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국인 구인신청/ 고용허가서 발급 (재발급) 신청 · 사증발급인정서 신청, 수령 	√	<필수>
		입국 후 (43,000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변동신고(안내) ·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·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, 사망신고 등 		
신규 입국자	편의제공 (76,000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·번역 지원, 고충상담 및 처리 ·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·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지원 등 ·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,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, 생활용어집 제공 ·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			<선택>

*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료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(43,000원) 및 편의제공 수수료(76,000원)를 기준으로 계산

제3조(수수료 납부) “갑”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“을”에게 납부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(86,000원)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수료환불) “을”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(파악 반응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변동 신고가 가능한 날로부터 14일 이내)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.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.

<수수료 환불계좌 정보>

예금주	계좌번호	은행명	비고

제5조(계약서 효력 등)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.

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“을”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.

③ 직인이 생략되어 있어도 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사 용 자 (갑)

(인)

대행기관 (을)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직인생략

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요망

【 위 임 장 】

『출입국관리법 제9조』 및 『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』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합니다.

성 명(대 표 자 명) :

업 체 명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주 소 :

전화번호(휴대폰번호) :

팩 스 번 호 :

【 행정대행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】

본인은 귀회가 본인에 대한 행정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항 목 : 성명, 전화번호
2. 기 간 : 대행계약 체결일 ~ 종료일
3. 목 적 : 대행 서비스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·제도 관련 안내 등

대표자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20 년 월 일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